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1015-01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편람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BN 89-6325-341-1



9 788963 253411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편람

문화재청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550000-001015-01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편람



문화유산헌장



문화 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습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 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 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 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1.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부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된다.
1.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1.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1997년 12월 8일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편람**

차 례

1.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보호법 발췌 조문7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53
 - 2-1.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예시)71
 - 2-2.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범례 중 공통사항79
3.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허가사무 시·도 위임83
4. 해설 및 FAQ등 (용어설명 포함)89
5. 문화재청, 지자체 연락처133

1.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보호법 발취 조문 <2009. 11.>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전적), 서적(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p> <p>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p> <p>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p> <p>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p> <p>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p> <p>3. 문화재자료 :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p> <p>③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p> <p>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p> <p>제4조 (문화재위원회 설치)</p> <p>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 반출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p>〈신설 2008.3.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3.28〉</p> <p>⑥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p> <p>제1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p>	<p>제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와 정비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p>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 (허가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p>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그 날부터 6개월 안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23조 (현상변경 등의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하며,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p>	<p>제29조 (허가신청서) ① 법 제34조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그 밖의 참고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4조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9호</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또는 영인(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p> <p>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표본)하거나 박제(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p>	<p>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9.26></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p> <p>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p> <p>2.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p> <p>3.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1></p>	<p>서식에 따른다.</p> <p>③ 법 제34조제3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p> <p>④ 법 제34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p> <p>제30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p> <p>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행위</p> <p>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음 각 목의 행위</p> <p>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결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p> <p>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p> <p>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p> <p>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p> <p>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p> <p>바.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p> <p>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p> <p>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p> <p>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p> <p>②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5.21></p> <p>1. 법 제90조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p> <p>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증설하는 행위</p> <p>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p> <p>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p> <p>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입야의 형질을 변경</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하는 행위</p> <p>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법 제5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행위</p> <p>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p> <p>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등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등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p> <p>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③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p>
제37조 (행정명령)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p> <p>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p> <p>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와 제2호 외의 필요한 조치</p> <p>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p>		<p>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8조 (신고 사항)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규 소유자가 각각 연서(연서)로 하여야 한다.</p> <p>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p> <p>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p> <p>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p>	<p>제27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p>	<p>제36조 (신고서) ①법 제38조 제1호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38조제2호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p> <p>③ 법 제3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및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p> <p>④ 법 제38조제6호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의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지번), 지목(지목),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p> <p>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p> <p>6. 국가지정문화재가 멸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p> <p>7. 제34조제1호나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p> <p>8. 제34조제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를 현상변경(현상변경)하거나 그 밖의 행위에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p> <p>9. 동식물의 종(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제55조 (권한의 위임) ① 옛 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p>른다.</p> <p>〈개정 2008.11.14〉</p> <p>⑤ 법 제38조제7호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반입신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p> <p>⑥ 법 제38조제8호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p> <p>⑦ 법 제38조제9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신고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p> <p>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굴할 발굴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등"이라 한다)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③ 제2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2008.2.29〉</p> <p>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굴기관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면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가. 제5항에 따른 발굴 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p> <p>나. 제5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발굴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이나 그 허가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p> <p>다. 제56조에 따른 제출 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보고서</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를 제출하는 행위</p> <p>2.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 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제9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 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이나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할 때 발굴 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면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p> <p>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드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p> <p>⑤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본다.</p>		
<p>제8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51조 (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9.26></p> <p>1.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p>	<p>제74조 (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제출) 시·도지사는 영 제5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면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2.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허가 및 그 취소</p> <p>3.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p> <p>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p> <p>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p> <p>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p> <p>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마. 표석,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p>	<p>여야 하며, 허가를 한 행위가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이행상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바. 철책이나 석책(석책)을 설치하는 행위</p> <p>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p> <p>아. 학술·연구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p> <p>4.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유,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p> <p>5.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p> <p>6.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7. 법 제38조제8호에 따른 신고의 수리 중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p> <p>8.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허가</p> <p>9.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p> <p>10. 법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p> <p>11.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의 수립 및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나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조치명령</p> <p>1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및 제60조제2항에 따른 통지</p> <p>13. 법 제10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제90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p> <p>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p>	<p>제5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①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그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p>	<p>제79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①행정기관이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2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p> <p>②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하는 건설 공사가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2008.9.26〉</p>	<p>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p> <p>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 중 제30조제2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개정 2009.5.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 환경, 도시계획, 대기오염, 화학물질, 열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p>③ 행정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별지 제107호서</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식의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④ 행정기관은 제1항 및 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법 제34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p> <p>⑤ 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고시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토절차를 생략한다.</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끝낸 뒤 그 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p>	<p>제53조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결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8.9.26〉</p> <p>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는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p> <p>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p>	<p>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경우 그 기관을 제2항에 따른 고시대상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동시에 알려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	
⑦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책에 포함된 조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제7호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6>	
⑧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⑨ 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절토(절토)나 굴착(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유구: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4. 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건설공사	
	5. 제55조에 따른 문화유적 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상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사업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p> <p>6.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입목)·죽(죽)의 식재 또는 벌채</p> <p>7.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p>	
<p>제9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①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p> <p>1. 제7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p> <p>2.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p> <p>3. 제34조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p> <p>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에서 제34조(제75조제2항</p>	<p>제60조 (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1. 법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p> <p>2. 법 제99조제1항제3호의 경우 : 전지역(「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및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유실자)는 양수인이 지</p>	<p>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p>⑤ 제4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100조 (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조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의 자격취소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등록 취소 제25조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제26조에 따른 수리기능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자의 등록취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8조에 따른 수리업자의 등록취소 제34조, 제35조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제82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p>제103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p> <p>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p> <p>2. 제1항, 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p> <p>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p> <p>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p> <p>[2003헌마377, 2007.7.26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104조 제4항 및 제7항 중 제4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p> <p>제105조 (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다중)의 위력(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107조 (사적 등예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108조 (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107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09조 (미수범 등) ①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0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②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0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10조 (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07조 또는 제1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04조제3항 및 제4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04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p> <p>제111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4조제1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p> <p>2. 제34조제3호(제42조와 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p> <p>3.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자</p> <p>4.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p> <p>2. 제5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제112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1항(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8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p> <p>2. 제22조제1항이나 제26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한 자</p> <p>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 수리업의 영업 행위를 한 자</p> <p>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4조제1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자</p> <p>5.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제113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4항(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 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 자 3. 제45조제4항 본문(제46조제2항에 따라 제45조제4항 본문이 준용되는 경우와 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에 책임이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허가 없이 제34조제2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9. 제43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6항·제8항, 제61조제6항, 제90조 또는 제91조제4항에 따른 명령, 지시 또는 조사에 불응한 자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제11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8조제6호 또는 제9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② 제38조제5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38조제8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제2항이나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9조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제1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11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p>	<p>제61조 (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제52조제1항의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53조제1항</p>	<p>제91조 삭제 <2008.9.26></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117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p>	<p>의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9.7.7]</p>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p>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p>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2009. 12. 17. 문화재청 훈령 제192호〉



(사적 제225호 초지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

1. 목적

-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는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문화재별로 보호되어야 하나 500m 이내에서 전체 문화재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어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마련,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문화재지역·지구 등의 지형이 고시되면 고시 필지별 행위제한 내용안내 등으로 토지이용 규제 정보화 및 투명화
-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관계전문가 영향검토를 생략하면서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고 지자체 행정력 감소

2. 관련근거

- 2006년 이전에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차원에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시도에 위임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문화재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허용기준안을 마련하도록 법령제정 (2006.6.23)
- 법 제34조 제3호, 제75조, 제90조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2조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52조, 제79조

3.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절차

- 현황자료조사 (시·군·구청장)
- 허용기준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시·군·구청장)
- 문화재청 / 시·도제출 (30일 이내)
- (시·도지사는 의견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장에 의견제시)
-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장)
- 허용기준 제정·고시 (문화재청장)
- ※ 시·도 문화재의 경우 시·도지사가 위 절차에 따라 제정

4.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에 따른 영향검토 범위조정

- 개별 문화재별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시 영향검토 범위를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의 별표에 반영 허용기준 작성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

제정	2006. 9. 27.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25호
개정	2008. 11. 6.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1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9.	문화재청	훈령 제165호
일부개정	2009. 12. 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09. 12. 17.	문화재청	훈령 제192호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용기준의 범위, 허용기준 마련 절차, 허용기준 작성시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기준의 의의) ①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은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대국민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준용규정)에 따라 동 지침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를 통합하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75조, 제90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제23조, 제52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4. 시·도 문화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 건설공사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에서 허용기준을 정하는 범위는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제3항 및 제79조 제6항에 따르며,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부터 제5호까지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30조의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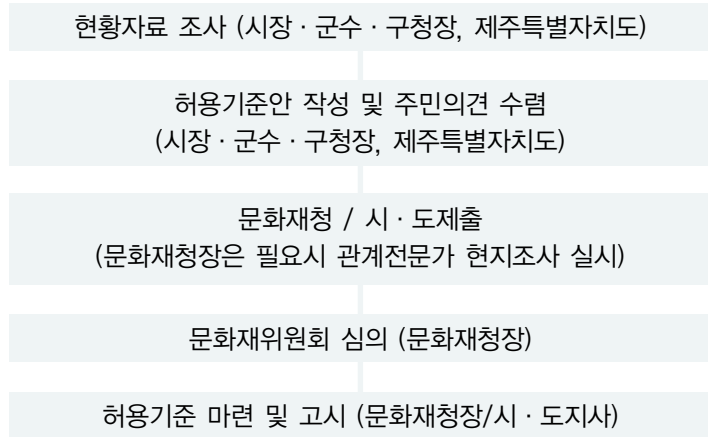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5.21)

1. 법 제90조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등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등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허용기준을 작성하는 범위는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별표3에 따른 각 문화재별로 정한 영향검토구역 범위로 하며, 별표3을 초과하는 지역은 타 법령(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2장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절차

제5조(허용기준 마련절차) ①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시·도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③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현황자료 조사 및 허용 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현황자료 조사) ①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의 연혁, 특성, 정비계획, 활용계획 및 주변의 입지환경, 토지이용실태 등을 조사한다.

②현황조사 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기관”으로 한다.)과 협의·조정한다.

③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허용기준안의 방향을 설정한다.

제7조(허용기준안 작성) ①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②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 외에 해당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 적용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문화재가 인접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간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2.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3. 시·도지정문화재 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4. 시·도(국가)지정문화재 내에 국가(시·도)지정문화재가 위치할 때

⑤허용기준안의 방향설정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허용기준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도, 지형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⑦허용기준안 작성은 문화재 주변의 보존 필요성, 주변의 개발정도, 기존 건물의 높이, 토지이용현황, 삼림, 수계, 지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지형, 삼림, 수계 등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건물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 기타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한다.

2. 문화재 주변의 기존 건물의 현황, 토지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층고의 최고 높이를 m 단위로 구분하여 구역을 정할 수 있다.

3. 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구역은 타 법령에 따른 처리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허용기준안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주민의견수렴 절차는 공청회,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제9조(허용기준안 제출) ①행정기관은 작성된 허용기준안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이 시·군·구청장 계획안과 상이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용기준안을 알려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후 30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재위원회 심의) ①지방자치단체의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문화재청장은 허용기준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허용기준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허용기준안 고시 및 시행)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허용기준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규칙 제79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한다.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허용기준에 따라 시·군·구 문화재 담당부서가 건축허가 등의 관계 부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그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 문화재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2조(허용기준의 변경) ①행정기관은 해당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변경·조정 등으로 그 주변의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을 경우에는 허용기준의 변경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허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허용기준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한다.

③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로부터 허용기준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영향검토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구역을 적용한다.

제3장 현황자료 조사내용 및 방법

제13조(현황조사 의의) ①문화재마다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달리하는 특성이 있고, 입지 및 주변환경이 각각 다르므로 개별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허용기준 작성시 기본방향 설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②현황조사 자료는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조사항목) ①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해 문화재에 대한 정보
2. 문화재 주변 현황
3. 관련법규 비교·분석
4. 기타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

②현황조사는 별표1의 세부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방법) ①문화재 정보 등 기초적인 항목은 각종 문헌조사, 통계자료,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②GIS 및 국토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토지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③조사된 자료 중 시각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도표·입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현상변경사항은 최근 5년간 허가 또는 불허한 사항의 위치, 이격거리, 신청인, 신청규모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16조(자료분석) ①해당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원래의 환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②문화재 주변 지형 및 조망현황, 건축물의 고도 등 현황, 자연환경, 수계 등을 분석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연계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을 용도지구(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의 강구 및 관련법규를 비교·검토한다.

제4장 허용기준 작성

제17조(기본원칙) ①문화재 보존·관리·활용과 주변 토지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건축물 건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적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아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
2. 동·식물의 서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
3. 기타 문화재 주변 경관 등 보호관리에 특별히 필요한 지역

③허용기준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높이산정은 다음과 같다.

1. 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 평균한 지점으로 한다.
2. 문화재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 돌출 점으로 한다.

〈예시〉

건물의 옥탑부가 있을 경우 옥탑의 최고점

④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⑤허용기준 용역 수행은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에서 한다.

제18조(검토기준) ①검토기준은 문화재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검토기준과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 검토기준으로 구분한다.

②검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5장 행정사항

제19조(심의자료 제출) 행정기관은 허용기준안, 현황조사 자료,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0조(기 위임사항 허용기준 마련) 기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시·도 위임사항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는 대상문화재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이 지침의 절차에 따라 허용기준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허용기준의 적용) 고시된 문화재별 허용기준은 시행규칙 제79조제6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8. 11.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상변경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조치)

동 지침에 따라 허용기준이 고시·시행되기 이전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을 허가한 사항 중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이 지침이 정한 허용기준의 범위일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는 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상변경허가권자(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부 칙 <2009. 8. 28.>

(시행일)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현황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문화재 정보	기본사항	종별, 명칭, 지정(보호)구역, 허용기준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 현상 등	
	주변현황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 등 입지환경 지형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수계현황, 주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정비계획 문제점, 향후 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동식물 생태 이동경로, 수립대, 서식지 등 토지이용 용도지구·지역·구역지정사항,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장애요소 문화재 보존관리 장애요소	
관련법규	법 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고도보존에 관한특별법 등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문제점	법규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기타사항	현상변경사항	문화재와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내용 등	
	주민의견 등	기존 현상변경허가 및 불허사항	
	기 타	허용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	

[별표2]

【허용기준안 검토기준】

1. 공통 검토기준

가. 관련법규에 관한 검토사항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보호법, 도시계획조례, 자연공원법, 고도의 경우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2)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와 허용기준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지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한다.
예)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3) 타 법령에 의거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활용한다.

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검토사항

- 1)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확인하고,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문화재 주변 대상범위(필요시 측량 확인)를 명확히 설정한다.
 - 유적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유적에 대하여는 문헌자료 등을 통하여 경역을 최대한 확인하고, 그 영역을 범위로 한다.
 -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여부를 확인(GIS 등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계획에 반영한다.
- 2) 문화재 보존관리계획에 주변 세부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는 동 계획을 반영하고, 수립되지 않은 경우는 허용기준을 문화재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3)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 등에 대한 규모, 형태, 색상, 재질,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지환경에 관한 검토사항

- 1) 원래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지형, 하천, 해변, 녹지, 식생 등이 거의 변하지 않은 원래의 자연적인 상태로 문화재 주변 경관이 양호한 경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를 위해 가시권 확보 또는 지형의 위치 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현 상태로 최대한 유지한다.
 - 양호한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당해문화재는 원래의 모습을 잃고 일부만 보존되고 있으나 주변환경이 양호한 경우에는 당해문화재의 향후 복원·정비를 고려하여 현 상태를 가능한 보존한다.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주변환경을 보호한다.
- 2) 문화재 주변에 농촌 등 자연마을이 위치할 경우
- 문화재 주변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문화재 주변에 일부 민가의 자연마을과 인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 3) 문화재 주변이 도시화가 된 경우
- 대도시형(인구의 밀집 및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된 경우)
예시) 서울, 대구 등 대도시 건물 밀집지역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양각을 적용할 수 있다.
 - 당해문화재의 한정된 일부만을 제외하고 주변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는 문화재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중도시형(인구의 밀집 및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
예시) 전주, 청주 등 중도시 건물 밀집지역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조망축)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지양한다.
 -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양각을 적용할 수 있다.
 - 당해문화재의 한정된 일부만을 제외하고 주변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재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 소도시형(인구의 밀집도가 낮고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
예시) 여수, 밀양 등 소도시 건물 밀집지역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조망축)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지양한다.
 - 지형, 해발고도, 조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절대높이를 설정할 수 있다.
 - 문화재의 위치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양각을 적용할 수 있다.

- 당해문화재의 한정된 일부만을 제외하고 주변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재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현 상태 이내의 범위 내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 개발촉진도시형(인구 유입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지형, 해발고도, 조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절대높이를 설정할 수 있다.
 -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조망축)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지양한다.
 -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규모, 색상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라. 조망권역에 관한 검토사항

- 1) 입지환경(현황조사 자료)에 따라 조망점 및 조망구간, 조망대상(조망축)을 설정한다.
- 2) 문화재 내부(조망점)에서 외부(조망대상)를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 문화재 내부 조망점은 안산(案山), 하천, 녹지지역 등의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한다.
- 3) 문화재 외부(조망점)에서 내부(문화재)를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 문화재 외부 조망점은 도로, 특정 건물, 산, 구릉 등에서 문화재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한다.
- 4)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의 어느 부분까지를 조망하느냐에 따라 조망각도는 달리 결정되므로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결정시 당해문화재 특성, 입지환경을 고려한다.
- 5) 조망권(조망축)을 확보하고 이해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요지점에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경관분석을 할 수 있다.

마. 허용기준 대상지역 적용범위의 구분에 관한 검토사항

- 1) 허용기준 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절대높이를 일괄적(동일하게)으로 적용할 수 있다.
- 2) 입지환경,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 대상지역을 구분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한다.
 - 일정한 거리별 구분, 도로, 하천, 구릉, 지반, 수림지대, 특정 건물 등
- 3)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4) 동일한 구간 내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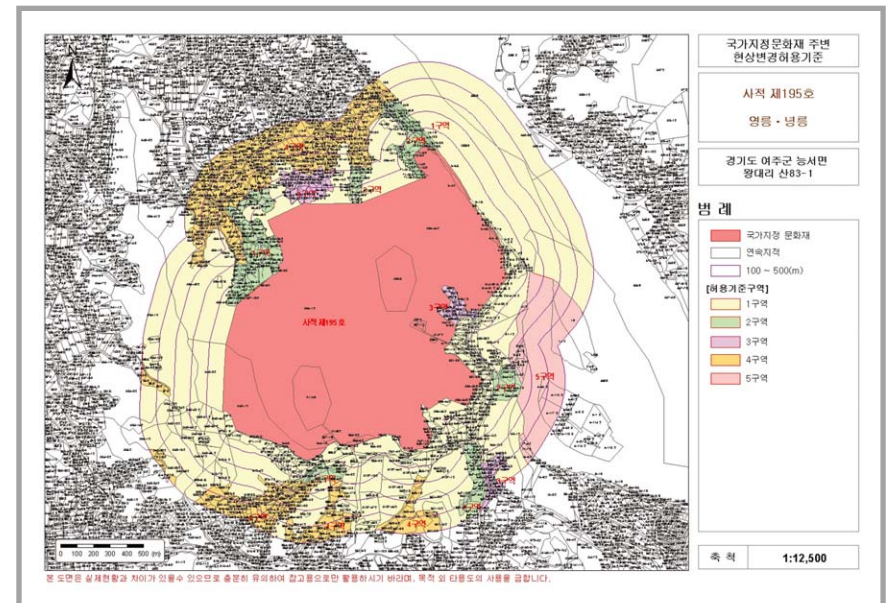
2-1.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예시)



(사적 제242호 필암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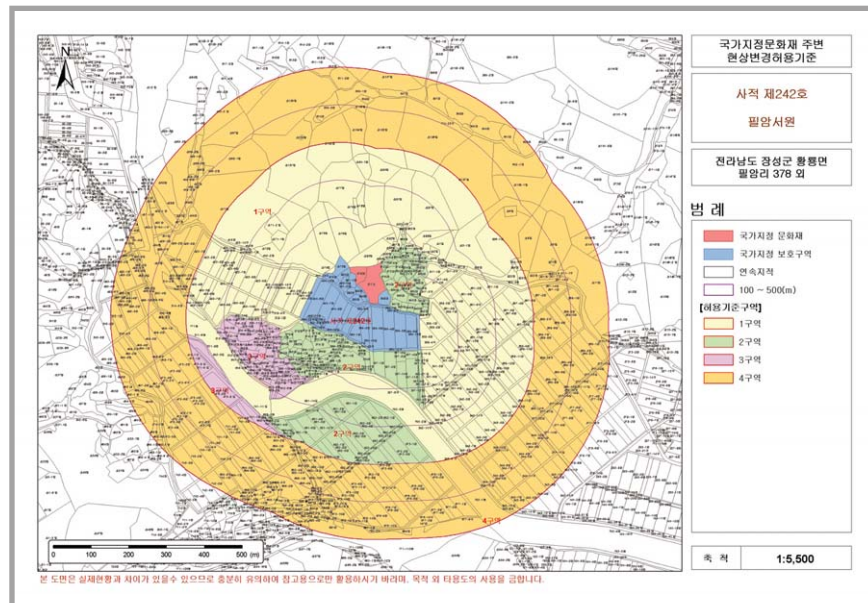
예시1 : 사적 제195호 영릉·녕릉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보존지역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제5구역	○ 여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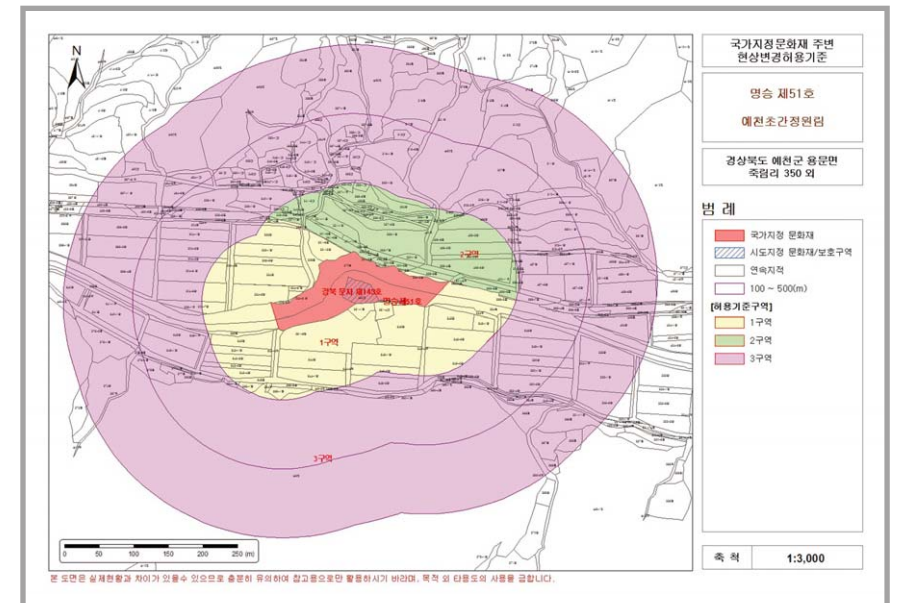
예시2 : 사적 제242호 필암서원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보존지역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예시3 : 명승 제51호 예천 초간정 원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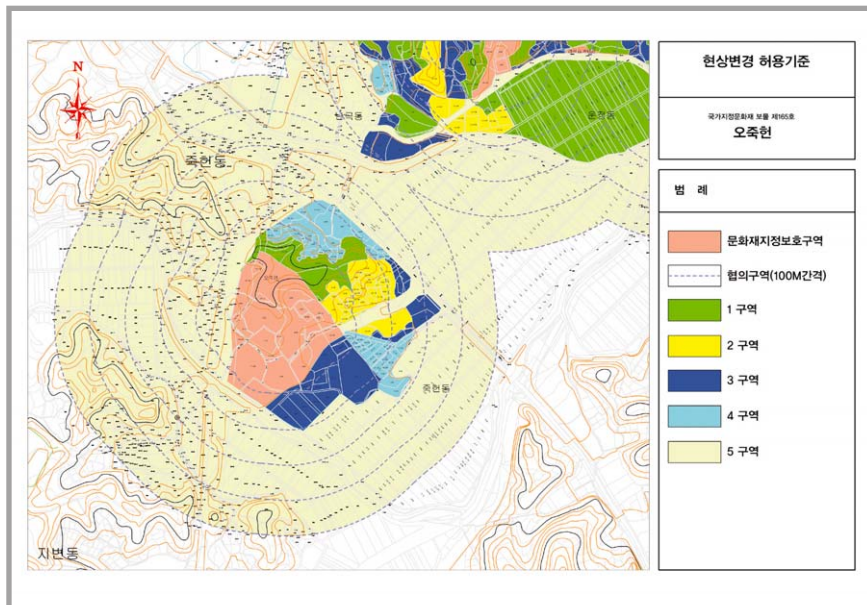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신축 5m 이하	○ 신축 7.5m 이하	전통가옥의 형태 유지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제3구역	○ 예천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질·성토 금지 ○ 제한시설 : 소음, 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 시설, 분뇨처리시설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예시4 : 중요민속자료 제5호 '강릉 선교장', 보물 제165호 '강릉 오죽헌', 보물 제183호 '강릉 해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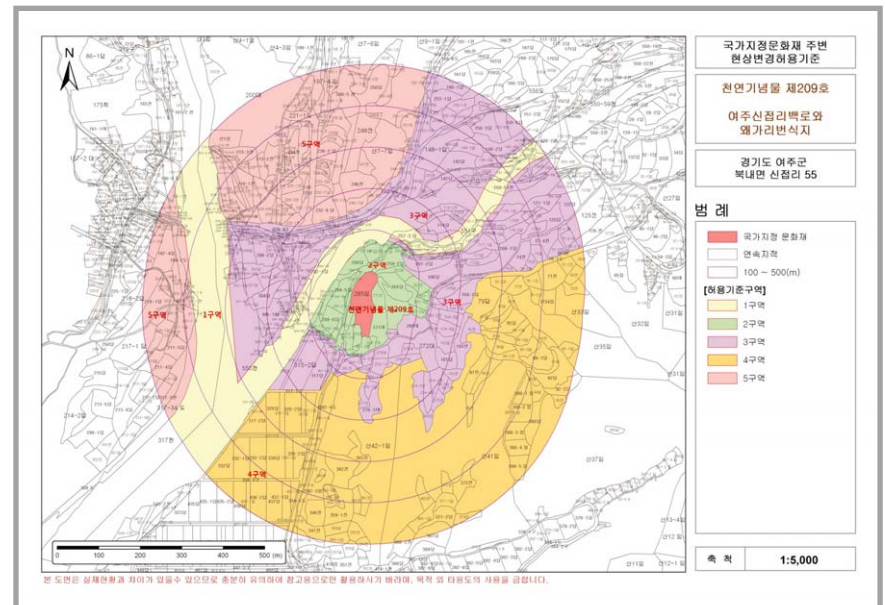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신축·증축 허용(3층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신축·증축 허용(3층 이하)	
제5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천연기념물 제484호 '강릉 오죽헌 울곡매' 주변은 별도의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름 (2007.11.29. 관보, 문화재청고시2007-107호 고시)



예시5 : 천연기념물 제209호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수계지역)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신축·증축 허용(3층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신축·증축 허용(3층 이하)	
제5구역	○ 여주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2-2.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 범례 중 공통사항



(사적 제128호 화암사지)

1. 적용 기준

- 가. 본 내용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 시 별래 중 공통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 나. 문화재별 특성, 입지여건,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다. 본 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 라. 본 내용에 없는 사항이더라도 별도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사항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 내용

가. 기존 시설물에 관한 사항

- 1)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 2) 기존 시설물은 재·개축을 허용하고,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10%범위 내 증축 허용한다.(단, 1회에 한한다.)

나. 건축물 최고높이에 관한 사항

- 1)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2)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단,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은 최고 높이 2m를 가산한다.

다. 별도 문화재청장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

- 1) A구역(또는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0m이내)에서의 유적정비를 위한 시설물 및 공익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별도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 2) A구역(또는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0m이내)에서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3) A구역(또는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0m이내)에서 다음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를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3.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허가사무 시·도 위임



(사적 제41호 경주 황오리 고분군)

라. 매장유구 확인에 관한 사항

- 1) A구역(또는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0m이내)에서 건축물 건립을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전문기관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존재를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 2) A구역(또는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0m이내)은 시굴조사 선행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 행위 여부 결정한다.
- 3) A구역(또는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0m이내)에서 00m이상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시설물 설치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 행위 여부 결정한다.

마. 수목 식재에 관한 사항

- 1) A구역(또는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0m이내)은 전통 고유 수종으로 식재한다.
- 2) A구역(또는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0m이내)은 전통조경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전통 고유 수종으로 식재한다.

바. 과도한 성·절토에 관한 사항

- 1) A구역(또는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0m이내)은 00m이하로 절·성토한다.

사. 건축물 입면, 디자인, 색상 등에 관한 사항

- 1) A구역(또는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0m이내)은 건축물의 지붕의 형태는 전통한식 지붕형태를 권고한다.
- 2) A구역(또는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0m이내)은 건축물의 지붕의 형태는 전통한식 지붕형태로 한다.
- 3) A구역(또는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0m이내)은 건축면적 00㎡ 이하 허용한다.
- 4) A구역(또는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0m이내)은 시각회랑 확보를 위해 문화재에 면한 건축물 변의 길이가 00m이하로 한다.
- 5) A구역(또는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0m이내)은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과 질감의 마감재 사용(원색, 반사재 재료 사용금지)한다.
- 6) A구역(또는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0m이내)의 담장, 대문, 주차장, 옹벽 등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게 설치한다.

1. 위임목적

- 현상변경 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불편 해소
-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생략으로 행정사무 간소화
- 지방자치단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책임성 부여

2. 위임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세부내용 별첨)
 - '04.7월 기 위임사항 조정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 고시('08.8.1)

3. 위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85조(권한의 위임)
 -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1조 제6호(권한의 위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 제4조
 - 시·도지사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재위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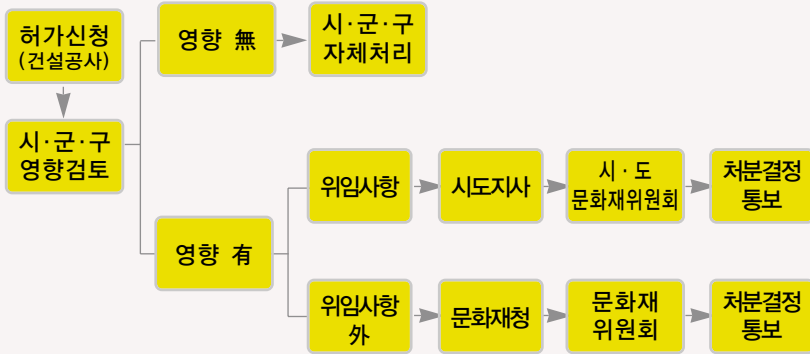
4. 위임적용

- 기 위임(문화재청 사적과-1347/'04.7.28) 사무는 폐지함.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나 관련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문화재에 한해 적용, 향후 마련될 경우 그 기준 및 지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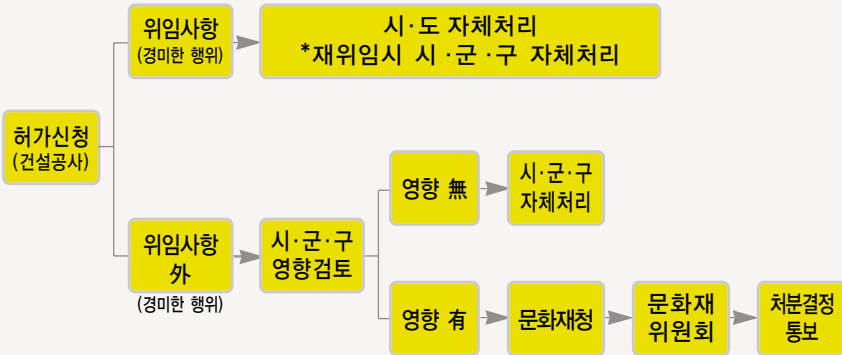
5. 위임사무 처리절차

- 수임기관이 시·도일 경우
 - 신청 → 시·군·구(시·도 진달) → 시·도 자체처리(시·군·구 통보)
-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재 위임한 경우
 - 신청 → 시·군·구 자체처리

■ 현행 < 04.7.28 지침기준 >



■ 위임 후 < 04.7.28 지침기준 >



■ 별첨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 허가사항

지역별	거리별	위 임 대 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	50m이내	• 기존 건축물·조형물 보수행위
	50m초과 100m이내	• 지상1층 이내의 건축행위 - 건축면적 : 8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 높이 5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설치행위
	100m초과 200m이내	• 지상3층 이내의 건축행위 - 건축면적 25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15m • 높이 11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설치행위
	200m초과 500m이내	• 지상5층 이내의 건축행위 - 건축면적 425㎡ - 건축물 최고높이 17m • 높이 17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설치행위
	100m초과 500m이내	• 상·하수도 및 가스의 관로, 소방 시설설치행위 • 오·폐수 처리 관로시설 매설 행위 •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
관리·녹지·자연환경 보전지역	200m초과 500m이내	• 지상1층 이내의 농가주택 건축행위 - 건축면적 85㎡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적용범위 및 용어해설		• 건물 최고높이 :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경사지붕의 경사비율 : 3:10이상 • 조경시설물 : 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 의자, 파고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 • 조형물 :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

2. 허가사항 변경허가 사항

- 신청인 변경, 허가기간 연장, 용도변경
- 동일 건축높이 내 허가면적의 10%범위 건축면적/연면적 증가(단, 1회에 한함)
- 동일부지 및 동일 이격거리 내 건축물(시설물) 위치변경
- 건물규모(최고높이, 층수) 변동 없는 구조 및 입면변경

4. 해설 및 FAQ 등 (용어설명 포함)



(사적 제209호 사릉)

01 '문화재' 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정의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를 의미한다.

- ▶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 **기념물** : 절터·옛무덤·조개무덤·성터·궁터·가마터·유물포함층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02 '지정문화재' 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천연기념물·명승·중요민속자료)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문화재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은 별임<별표1>서식과 같습니다.

03 '문화재 구역(=지정구역)'이란?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범위)을 말하며, 전적류, 도자기류, 금속공예류 등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토지나 임야지역에 당해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일정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을 줄여서 '지정구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탑 또는 부도만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만 있고, 문화재 구역(=지정구역)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 주로 부동산문화재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문화재 구역(=지정구역)은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소유자 주소·성명 순으로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04 '문화재보호구역'이란?

'문화재 보호구역'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법 제9조) 즉,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당해 문화재(문화재구역<지정구역> 포함)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당해문화재 주변의 일정한 토지(임야)에 범위를 설정하여 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소유자 주소·성명 순으로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화재별 '보호구역지정기준'은(별표 2)와 같습니다.



05 '문화재보호물'이란?

당해 문화재가 비(碑)나 불상, 전적류, 판각 등 주로 동산문화재일 경우, 이 동산문화재 보호를 위한 비각(碑閣)이나 보호각, 대웅전 등 건조물을 '보호물'로 지정할 경우, 이를 "문화재보호물"이라고 합니다.

06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한 '현상변경 등 행위'란 무엇인가?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문화재의 생김새·환경·경관·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07 '문화재위원회'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두는 자문기구입니다. 동 위원회의 조사·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사항)

-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반출의 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매장문화재의 발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사항,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 4577호, 1970. 2. 7 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문화재위원회는 120인 이내의 위원(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9개의 분과 위원회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과 민속자료 중 가옥에 관한 사항
-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재(건조물 제외), 보상금 및 국가가 매입한 문화재의 평가에 관한 사항
- ▶ 사 적 분 과 위 원 회 : 기념물 중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
- ▶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 무형문화재, 민속자료(가옥제외)에 관한 사항
- ▶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 기념물(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
- ▶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 매장문화재(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에 관한 사항
-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 ▶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 민속자료에 관한 사항
- ▶ 세계유산분과위원회 :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

* 등록문화재 등록기준

- ①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인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1.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예술·산업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4.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5. 전통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01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은?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 이하 같음)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합니다(법 제3조). 문화재 원형유지란 문화재를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주변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임의로 파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02 현상변경 등 행위의 구분은?

문화재의 현상변경 등 행위는

▶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것을 포함) 자체의 현상변경 행위(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 포함)와 ② 당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 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바.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사.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
- 아. 토석·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반입·반출·제거행위
- 자. 광고물등의 설치·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행위

②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5.21>

1. 법 제90조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등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등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03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 절차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 문화재담당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허가신청서 작성 (시·군·구 문화재담당과에 제출) → 문화재청 접수 → 관계전문가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 허가여부 통지(시·도·시·군·구) → 신청인

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작성 제출

건설공사 등 현상변경행위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별지 제50호 서식>)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문화재(명칭, 종별<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국보, 보물 등>, 지정번호, 수량<지정면적 등>, 소재지<보관장소>), 보호구역·보호물, 신청사유, 현상변경등의 부분, 현상 변경등의 내용, 현상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사담당자(성명, 기술자·기능자·수리업자등록번호, 주소), 착공 및 준공예정연월일(착공, 준공), 소요경비, 재원(국비, 지방비, 개인 부담 등), 기타사항 등

이때 설계도서(건물배치도, 현황도, 계획도,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종·횡단면도, 지붕 양식도 등), 현장사진(원경<신청지 문화재>, 전경, 근경<연결사진> 등), 위치도(대상문화재와 신청지역, 이격거리 표시 등), 기타 신청사유 등 현상변경 신청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모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의 용지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검토 및 신청서 처리

신청인 이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의 신청 행위가 문화재보호법 규정(제34조 제3호)에 의한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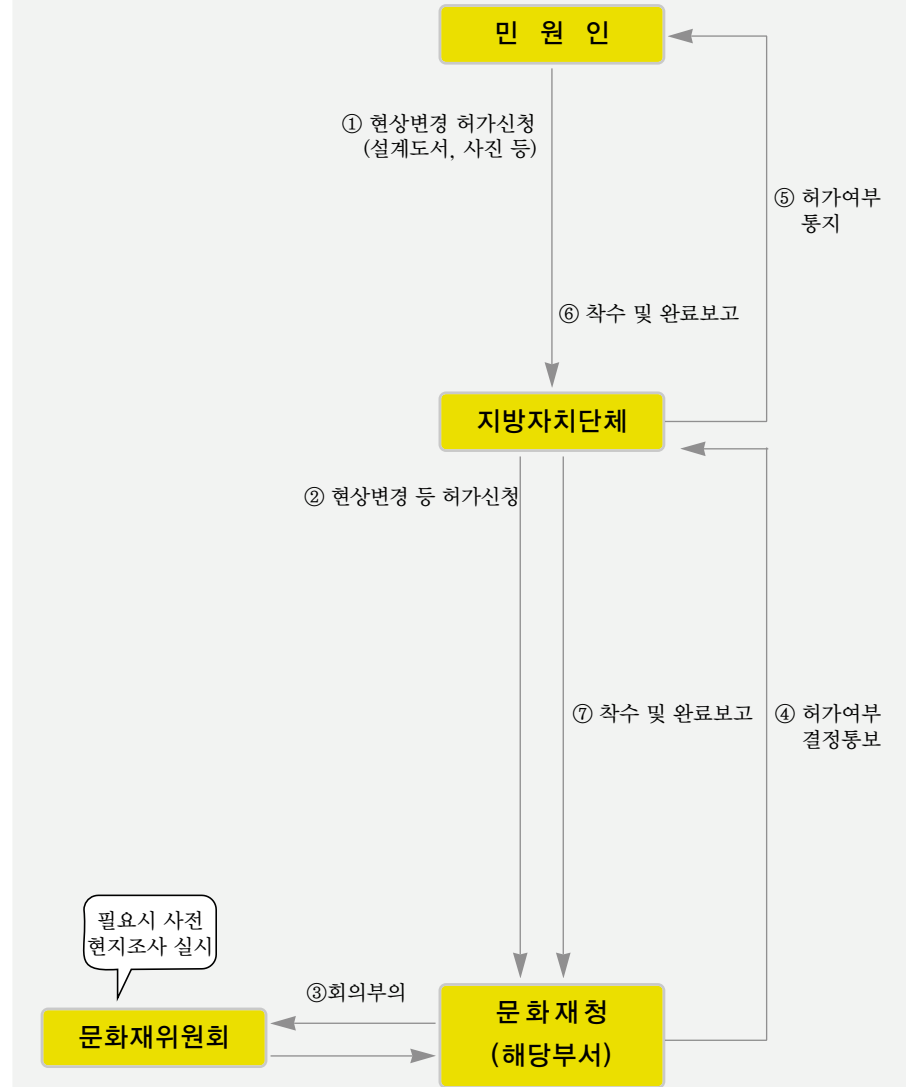
을 포함한다)의 현상변경(천연기념물중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하며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에 따른 검토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관계전문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79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 ▶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 문화재보호법 제72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이 경우,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이 문화재현상변경등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위임된 권한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인·허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전문가 3인이상의 검토결과 1/2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사전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관련서류 일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흐름도 참조>

처리흐름도



3. 문화재청장의 신청서류 처리

*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서류 접수 → 문화재위원회 부의(필요시 관계 전문가 사전 현지 조사) → 허가여부 회신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서류 검토 시 설계서 등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자료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동시통보)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하고,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여부 결정통지는 신청서 접수처리의 반대 순으로 문화재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4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사항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여부 처리 기간은 허가 신청서 접수부터 허가여부 결정까지 3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출서류 검토결과, 보완 및 관계전문가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문화재위원회 심의일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5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처분 기준은?

현상변경 등 허가 처분을 결정하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문화재보호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사항별로 관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 훼손 여부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성격과 소재한 장소가 각각 다르고 현상변경 등 행위가 다양하여 허가 처분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형화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에 대하여는 경관보존 지역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건축 행위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설정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관계전문가 검토 및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문화재별로 현상변경 등의 구체적인 범위 기준을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까지 완료)

06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에 대한 거리의 기준은?

문화재보호법령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의 거리”는 도면상의 직선(수평)거리이며,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한 거리입니다.

07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만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나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그 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허가일 뿐 건축행위의 본질의 허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법에 규정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08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컨테이너 설치도 현상변경 등 행위인가?

컨테이너는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같은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로 바닥에 컨테이너를 고정시키고 사무실·창고·숙소 등의 용도로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영향여부 검토 실시하여 영향이 있을 경우 현상변경 등 행위에 해당됩니다.

09 이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지역 범위내에서 다른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다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범위 내에서 원래 허가받은 건물에 부속되는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주변 지역의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 문화재보존 영향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청구의 주체는?

문화재의 주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 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주체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입니다.

11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관계전문가”의 범위에는 비전공자와 관련학과이지만 해당 문화재와 전공분야가 관련이 없는 전공교수도 포함되는가? (예. 조경학과의 현대조경 전공자, 사학과의 서양현대사 전공자, 건축학과의 현대건축 전공 등)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서 관계전문가의 범주를 정한 취지는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전문가의 검토는 당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1항 제3호는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이 없는 전공 교수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2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5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전에 지표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조사 보고서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문화재보존 영향 평가를 거쳤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또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화재 지표조사는 당해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일 뿐, 문화재 주변경관 보존에 대한 영향 평가는 아니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 허가권자는 ?

시·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71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의 규정과 각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권은 각 시·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해 각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14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가 중복 되어 있는 경우의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은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지정 문화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정문화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각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5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국가지정문화재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은 ?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2개 이상 일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서의 대상 문화재에 모두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문화재로부터 신청지역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문화재 담당과에서 동 업무를 주관하고, 담당부서간의 업무협의를 거쳐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됩니다.

16 ‘가지정’ 문화재도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가지정문화재도 문화재보호법 제42조(준용)의 규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와 같이 문화재청장의 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7 가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는 ?

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절차 및 처리는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절차 및 처리와 동일합니다.

18 현상변경 등 허가의 착수 및 완료행위는 어떻게 하나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착수·완료)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 ?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권자가 청문을 실시합니다(법 제100조의6). 청문이란 행정기관이 규칙제정이나 행정처분 또는 재결(裁決) 등을 행하는데 그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대방·이해관계인·증인·감정인 등의 변명이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20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규정(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죽은 천연기념물 포함)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111조제 1항).
그리고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에 속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111조 제2항).

21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고 기간 내 허가사항에 대한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

신고의무 기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115조 과태료 제3항)

22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에 대한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의 처벌은 ?

착수 및 완료에 대해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113조 관리행위방해등의 죄).

23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무허가 행위나 신고 의무의 위반행위를 한 때의 처벌은 ?

실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법 제117조 양벌규정).

24 현상변경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구제는 무엇이 있나요 ?

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구제는 재심청구와 행정쟁송이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불허처분을 받은 사항을 수정 변경하여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재심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결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 합니다.

행정쟁송은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등 행위 불허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상급기관에 청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25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의 기준 시점이 도시개발법의 여러 행정절차 단계 중 언제인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설행위의 물량, 규모, 범위 등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여부가 구체적으로 검토가능한 단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특별히 도시개발법의 행정절차 중 어느 단계 이전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6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구역(이하 '영향검토 구역'이라 한다) 중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이 고시됨으로 인해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의한 영향검토 절차를 원천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영향검토 제척 구역)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매장문화재는 제외)로 인한 토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보아도 무방한지의 여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된 내용 중 시군구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있는 구역의 경우라도 현행 문화재보호법 및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해제 및 규제내용 삭제 등은 할 수 없습니다.

27 시도위임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중 동일 건축높이 내 허가면적의 10%범위 건축면적/연면적 증가(단, 1회에 한함)에서 신청인이 1회에 최초 허가면적 보다 5% 증가, 2회에 최초 허가면적보다 8% 증가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 2회째라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최초 허가면적보다 건축면적/연면적이 10%로 이내의 범위로 단 1회를 의미합니다. 즉 최초허가면적보다 1.1배까지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최초 허가면적의 1.1배이하이면 몇 번 변경허가 신청하더라도 시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8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한 신청내용을 신청인이 시군구에 제출하였을 때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

현재 고시 시행 중인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3항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내용(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증설하는 행위 등) 고시한 사항으로 허용기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해야 합니다.

29 신청인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 하고자 하면 모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대상으로서 문화재청장의 받아야 하는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 하고자 한다고 해서 모두 현상변경 등 허가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없으면 현상변경 등 허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군구에서 자체 허가처리합니다. 영향을 있을 경우에만 현상변경 등 허가 단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30 시군구에서 영향검토를 실시한 결과 영향이 없다고 검토되어 시군구에서 자체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규모를 변경하여 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시군구에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결과 영향없음으로 시군구 자체 허가 처리한 사항으로서, 본 사항은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규모를 변경 신청하였다고 해서 바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영향을 있을 경우에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1 문화재 주변 기존 건축물·시설물 내부 구조변경 사항도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내부 구조변경 사항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에 변화가 없는 사항으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32 시군구에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실시한 결과 영향이 없다고 검토되어 시군구에서 자체처리한 사항을 신청인이 당초 자체처리한 사항보다 규모를 달리하여 건설행위를 하였을 때 신청인은 문화재청장의 추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화재보호법령에는 추진허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허가한 사항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건설행위 관련 추진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시군구에서 다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영향검토 실시 결과 영향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 대상이 되고, 허가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불허처분을 받을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33 시군구에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실시한 결과 영향이 있어,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결과 문화재청장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신청 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이 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시군구에서 다시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를 실시해야 하는지?

당초에 비록 문화재청장의 불허가 처분을 받았더라도 변경된 신청 행위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미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변경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다시 영향검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4 시군구에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실시한 결과 영향이 있어,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결과 문화재청장의 허가 처분을 받은 신청 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이 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시군구에서 다시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를 실시해야 하는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내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허가 사항으로서 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시군구에서 다시 영향검토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경 신청내용이 시도위임범위 내에 해당되면 시도에서 자체처리하고, 시도위임범위를 초과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5 문화재 주변에서 건축물·시설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건축물 용도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있는지?

- 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문화재 주변에서 건축물·시설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시군구에서 해당 건설행위에 대하여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관계전문가들이 영향없음으로 검토할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자체 허가처리를 하지만, 용도를 포함하여 문제화함에 따라 영향있음으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된 경우
 -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별도로 용도를 규제하고 있는 구역을 제외하고는 용도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36 문화재 주변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단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 문화재 주변에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경우 단순 용도변경 사항은 별도 규제가 없습니다.
 - 문화재보호법의 규제가 발생하여 시군구에서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관련 관계전문가 문화재 영향 검토 후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자체 허가 처리한 건축물·시설물의 단순 용도변경의 경우도 용도변경 사항 관련 별도 규제가 없습니다.
 - 문화재보호법의 규제가 발생하여 시군구에서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관련 관계전문가 문화재 영향 검토 후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시설물의 경우 그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또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용도변경 관련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②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된 경우>
 -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별도로 용도를 규제하고 있는 구역을 제외하고는 단순 용도변경 사항 관련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용도를 규제하고 있는 구역 내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7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서로 겹칠 때 겹치는 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은 누가 고시하는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은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은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각각 고시해야 합니다.

38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법령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십시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적 제00호 '0000'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예시)〉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보존구역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제3구역	○ 00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일단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고시되면 모든 해당문화재 주변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대한 3인 이상 영향검토는 생략됩니다. 따라서 제1구역에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과 제2구역에서 해당 높이를 초과한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건의 경우 3인 이상 영향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하면 됩니다.
- 제1구역(보존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 재·개축 시 인접 필지 병합 개발은 허용하지 않으며, 해당 필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2·3구역의 경우 건축물 지하층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2구역의 경우의 경우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토목행위(고속도로, 고가도로, 교량 등) 등에 대해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 관련 행위가 아닐 경우 3인 이상 영향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합니다.
- 제2·3구역의 경우 건축물 건립에 따른 불가피한 성·절토 발생부분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판단 후 자체(허가, 불허, 조건부 허가) 처리 통지 할 것.

- 제3구역 '00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의 구역의 경우 적용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건축공사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 행위 등 포함). 그러므로 3구역에는 위조항을 제외한 문화재보호법(지표조사 등), 시도문화재보호조례, 도시계획조례 등 타 관련 법률도 함께 검토·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규제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관련 규제는 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문화재보호조례 검토 시 별도 검토 필요 없습니다.[예] 경기도 00시 소재 사적 제00호 '0000'로부터 250m이격된 주거·상업·공업 지역 위치에 10층 이상 건축물 신축 건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등 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별도 문화재청장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해당 시·군·구에서 자체 허가처리 가능함]

국가지정문화재의지정기준 (제2조관련)

문화재의 종 별	지 정 기 준
1. 보 물	<p>1. 건조물</p> <p>가. 목조건축물류 당탑·궁전·성문·전랑·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민가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p> <p>나.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첨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p> <p>다. 분 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p> <p>2. 전적·서적·고문서</p> <p>가. 전적류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고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p> <p>나. 서적류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묵적·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 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p> <p>다.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p> <p>3. 회화·조각</p> <p>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p> <p>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p> <p>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p> <p>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p> <p>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p>

문화재의 종 별	지 정 기 준
	<p>4. 공예품</p> <p>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p> <p>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p> <p>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p> <p>5. 고고 자료</p> <p>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p> <p>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p> <p>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p> <p>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p> <p>6. 무 구</p> <p>가.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p> <p>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p>
2. 국 보	<p>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p> <p>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p> <p>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은 것</p> <p>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작·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p> <p>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p>
3. 중요 무형문화재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p> <p>1. 연 극 인형극·가면극</p> <p>2. 음 악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p> <p>3. 무 용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p> <p>4. 공예기술 도자공예·피모공예·금속공예·골각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수·매듭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죽공예·무구공예</p>

문화재의 종 별	지 정 기 준
	5.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4. 사 적	1. 유사 이전의 유적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 등)·지석·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그 밖에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성곽·성지·책체·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궁전지·고도·고궁, 그 밖에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4.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고도(옛길)·교지·뚝·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 그 밖에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5.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6. 분묘·비등 분묘·비·구택·원지·정전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5. 명 승	1.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도서 등 2.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누(樓)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사구, 하천의 발원지, 동천·대(臺), 바위, 동굴 등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가. 정원·원림·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 길 등 나. 역사·문학·구전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6.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문화재의 종 별	지 정 기 준
6. 천연 기념물	1. 동·식물 가. 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나. 석화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다.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자생지 라.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 마. 문화적·과학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명목·거수·노수·기형목 바. 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 사.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아. 생활·민속·의식주·신앙·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자.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차.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2. 지질·광물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 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1) 지판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 구조나 암석 2)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3) 각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와 그 분포지 4)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나. 지질 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1) 각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과 그 산지 2) 지질 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3)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 표본과 그 산지 4)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 구조·퇴적 구조와 암석 1) 지질 구조 : 습곡, 단층, 관입, 부정합, 주상절리 등 2) 퇴적 구조 : 연흔, 건열, 사층리, 우흔 등 3) 기타 특이한 구조의 암석 : 베개용암,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鵝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라.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1) 구조 운동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 : 고위 평탄면, 해안 단구, 하안 단구, 폭포 등

문화재의 종 별	지 정 기 준
	2)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 : 단성화산체, 화구,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복합암체 등 3)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한 지형 : 사구, 해변, 갯벌, 육계도, 사행천, 석호, 카르스트 지형, 석회 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 분지, 협곡, 해식애, 선상지, 삼각주, 사주 등 4) 풍화 작용과 관련된 지형 :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 괴류 등 5) 기타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마.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지질현상 1) 얼음골, 풍혈 2) 샘 : 온천, 냉천, 광천 3) 특이한 해양 현상 등 3. 천연보호구역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나.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다.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4. 자연현상 관상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7. 중요 민속자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기타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문화재의 종 별	지 정 기 준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자료를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점에 같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4조제1항관련)

	지 정 기 준
1.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 자료의 보호구역	1.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20미터부터 100미터(사찰건조물의 경우에는 2천 미터) 이내의 구역 2. 석탑·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10미터부터 25미터 이내의 구역 3. 석비·부도·석종·석불(건물 내에 안치된 것은 제외한다) 등은 대석의 최돌출점에서 10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4. 첨성대는 하부 기단에서 50미터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5. 석빙고는 벽면 상부 지면에서 20미터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6. 석굴은 하부 기단에서 100미터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 7. 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 8. 당간지주·석등·노주·석조 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 9. 석교는 교대 및 교각에서 10미터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10. 그 밖의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각각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문화재의 종 별	지 정 기 준
2. 사적의 보호구역	1. 성곽 등은 성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2. 성·산성·성내전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2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제방은 성곽에 준한다. 4. 왕릉·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10미터부터 1천 미터 이내의 구역 5. 사지·사우지·전묘지·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6.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보·보물의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에 따른다. 7.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의2. 명승 의 보호구역	경승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천연 기념물의 보호구역	1.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4. 보호물	1. 지상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철책·석책·위장 그 밖에 해당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2. 동종·석비·불상 등은 종각·비각·불각 3. 그 밖의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5. 보호물 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1.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기타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달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5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2. 보호물이 석책·철책·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2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						
대상 문화재	종 별	명 칭	지정번호	제 호		
사 업 개 요	사업명					
	위 치			이격거리	m	
	내 용					
문 화 재 입 지 현 황 분 석 (뒤 쪽 참 조)	① 해당 문화재의 특성					
	② 해당 문화재 소재 및 주변개발 현황					
	③ 그 밖의 문화재 특이사항					
검 토 항 목				해 당 여 부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행위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행위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등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중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종합의견 (영향 사유 등 구체적 기재)		영향여부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주변지역(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를 초과하지 못한다)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개진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작성자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이오니 다른 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등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함)
4. 다음 각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에 관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허가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본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의거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및 감독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받는자	성 명					
	주 소					
대상문화재	종 별	사 적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사항	개 요					
	위 치					
	내 용					
기 간	허가일부터	년	월	일까지 완료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인						

210mmx297mm[보존용지(1종) 70g/m²]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이오니 다른 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등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함)
4. 다음 각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나.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다. 허가사항에 관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허가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본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의거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및 감독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1. 문화재 내부



2.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
(행위자 관할시·군·구)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접수
(위임 범위내 자체 처리)
위임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신청사항 관계전문가 3인 이상 검토
-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서 (시·군·구)



검토결과 1/2 이상이 문화재보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토되었을 경우
- 의견서 첨부,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제출
(시·군·구 → 문화재청, 시·도)



허가신청서 접수, 관계전문가검토,
필요시 현지조사(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청)



허가여부 행정처분 사항 통보
(문화재청 → 시·군·구)



문화재청장의 행정처분 사항 접수 및 시달



시달된 허가여부 행정 처분사항 접수 및 통지
(시·군·구 → 신청인)



신청인에게 허가처분 사항 통지

5. 문화재청 · 지자체 연락처



(사적 제136호 참성단)

문 화 재 청



구 분	전 화	팩 스	비 고	구 분	전 화	팩 스	비 고
청 장	042-481-4600	042-472-3400		문화재정책국장	042-481-4900	042-472-3418	
비서실	042-481-4603-4, 6	042-481-4609			042-481-4903	042-481-4829	
대변인	042-481-4670			정책총괄과	042-481-4810		
언론홍보	042-481-4671-3, 6	042-481-4679		총 괄	042-481-4813-6		
정책홍보	042-481-4674-5, 7			정책기획	042-481-4817-8	042-481-4829	
차 장	042-481-4690	042-472-3413		정책협력	042-481-4811-2		
비서실	042-481-4694	042-481-4609		교육홍보	042-481-4698-9		
운영지원과	042-481-4620	042-472-3403		무형문화재과	042-481-4960		
서무/복지	042-481-4631-4, 6			기획총괄	042-481-4623-4, 4961-3	042-481-4979	
경 리	042-481-4660-5	042-481-4669		공 예	042-481-4964, 6-7		
인 사	042-481-4640-5			예능	042-481-4968-70		
기사실	042-481-4653-4			발굴제도과	042-481-4940		
기획조정관	042-481-4610	042-472-3401		총 괄	042-481-4941-6		
안 내	042-481-4613	042-481-4799		국책사업지원	042-481-4947	042-481-4959	
기획재정담당관	042-481-4780			유적정보	042-481-4950-2		
기 획	042-481-4781-3	042-481-4799		운영협력	042-481-4953-5		
국 회	042-481-4791-2, 4			유적관리	042-481-4957-8, 77		
예산편성	042-481-4784, 86, 93			문화재 GIS 추진팀	042-481-4614, 25-8	042-481-4629	
예산집행	042-481-4785, 7			안전기준과	042-481-4933	042-472-3406	
행정관리담당관	042-481-4710			재난관리	042-481-4820-2, 4931, 07	042-481-4932	
조 직	042-481-4716-7, 9	042-481-4729		사범단속	042-481-4923-6	080-290-8000	
변화관리	042-481-4711-2			재난상황실	042-481-4804-5		
성과평가	042-481-4723-6			고도보존팀	042-481-4850		
규제법무감사팀	042-481-4652			고도육성1	042-481-4851-3	042-481-4975	
법 무	042-481-4788-90	042-481-4649		고도육성2	042-481-4854-5		
감 사	042-481-4713, 20-22, 4937			국유재산	042-481-4856-9		
정보화기획팀	042-481-4750			문화재보존국장	042-481-4680	042-472-3404	
정보화기획	042-481-4755-7	042-481-4769		안 내	042-481-4683	042-481-4849	
정보관리	042-481-4760-3						
기록관리	042-481-4751-3, 64-5						
(기록관)	042-481-4770-1						
보존서고	042-481-4934	042-481-4779					
컴퓨터 A/S	042-481-4766						

구분	전화	팩스	비고	구분	전화	팩스	비고
공능문화재과	042-481-4700	042-481-4709		보존정책과	042-481-4830	042-481-4849	
관 리	042-481-4701-5, 4909			총 괄	042-481-4831-4		
조 경	042-481-4706-8, 4895			보존정책	042-481-4841-3		
보수1	042-481-4773-6, 4906			현상변경	042-481-4835-7, 44		
보수2	042-481-4777-8, 4904-5			보수정비	042-481-4838-40, 47-8		
국제교류과	042-481-4730	042-481-4759		유형문화재과	042-481-4910	042-481-4939	
양자교류	042-481-4731-6			관 리	042-481-4911-3, 4689		
다자협력	042-481-4739, 97-8			건조물1	042-481-4914-5		
세계유산	042-481-4737-8			건조물2	042-481-4917-9		
근대문화재과	042-481-4880	042-481-4899		동산보존관리	042-481-4920-1, 4684	042-481-4999	
총 괄	042-481-4881-3, 90-1			동산지정	042-481-4686-8		
근대건축	042-481-4884-7			전문위원	042-481-4876-8		
전문위원	042-481-4896			천연기념물과	042-481-4980		
근대동산	042-481-4892-4			동 물	042-481-4981-4		
국립문화재연구소	042-860-9114	042-861-4922	천연기념물 센터	식 물	042-481-4986-8	042-481-4749	
행정운영과	042-860-9120-8	042-861-4923		지 질	042-481-4989-91		
연구기획과	042-860-9130-7	042-861-5233		명 승	042-481-4992-3		
고고연구실	042-860-9170-9	042-861-4924		수리기술과	042-481-4860		
풍납토성발굴단	02-484-9404	02-487-9431		기술정책	042-481-4861-4		
경복궁발굴단	02-720-7068			기술진흥	042-481-4865-6		
송례문발굴단	02-720-7066			설계심사	042-481-4869-71		
미술문화재연구실	042-860-9190-8	042-861-4925		승례문복구	042-481-4828, 72-4, 98		
건축문화재연구실	042-860-9210-7	042-861-4926		문화재활용국장	042-481-4800		
무형문화재연구실	042-860-9230-6	042-861-4927		안 내	042-481-4803		
보존과학연구실	042-860-9250-1, 3	042-861-4928		활용정책과	042-481-4740		
복원기술연구실	042-860-9340-8	042-861-5168		총 괄	042-481-4741, 3, 4806, 09		
자연문화재연구실	042-610-7610-9	042-483-1264		활용정책	042-481-4745-8		
				녹색성장	042-481-4742, 4		
				민간협력	042-481-4819, 23-4		
				전문위원	042-481-4825		

구분	전화	팩스	비고	구분	전화	팩스	비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054-777-8800	054-777-8890		현충사관리소	041-539-4600	041-544-0478		
기획운영과	054-777-8820-3			기획운영과	041-539-4603-11			
학예연구실	054-777-8805			관리과	041-539-4612-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041-833-5902	041-832-1384		세종대왕유적관리소	031-885-3122-4	031-885-3125		
기획운영과	041-833-5901			칠백의총관리소	041-753-8701-3	041-753-5700		
학예연구실	041-833-0305			경복궁관리소	02-3700-3900-1	02-3700-3909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055-285-1314-5	055-263-3657		창덕궁관리소	02-762-9513, 8261	02-762-2070		
기획운영과	055-285-1314			창경궁관리소	02-762-9515	02-762-9514		
학예연구실	055-285-1315			덕수궁관리소	02-771-9952	02-771-995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061-337-9960-2	061-337-9963		종묘관리소	02-762-3552	02-3672-4332		
기획운영과	061-337-9961			정릉관리소	02-914-5133	02-916-0612		
학예연구실	061-337-9962			연산군묘출장소	02-3494-0370	02-3494-0370		
국립충원문화재연구소	043-855-8961-3	043-855-8964		서오릉관리소	02-359-0090	02-359-0068		
기획운영과	043-855-8960			서삼릉출장소	031-962-6009	031-966-6558		
학예연구실	043-855-8962-3			광릉관리소	031-527-7105	031-527-466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042-860-9361-2	041-830-7010		동구릉관리소	031-563-2909	031-569-3346		
한국전통문화학교	041-830-7114			태릉관리소	02-972-0370	02-972-6301		
교학처	041-830-7300			홍유릉관리소	031-592-0821	031-591-5628		
교무과	041-830-7100-3	041-830-7020		사릉관리소	031-573-8124	031-573-9658		
학생과	041-830-7050	041-830-7040		현릉관리소	02-445-0347	02-445-9765		
전통문화연수원	041-830-7800	041-830-7829		선릉관리소	02-568-1291	02-568-0773		
총무과	041-830-7200	041-830-7242		용릉관리소	031-222-0142	031-225-0144		
국립고궁박물관	02-3701-7500	02-3701-7620		02-3701-7640	파주삼릉관리소	031-941-4208		031-946-0425
기획운영과	02-3701-7610-8				장릉관리소	031-984-2897		031-982-7261
전시홍보과	02-3701-7630-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1-270-2000	061-270-2039		
유물과학과	02-3701-7650-8	02-3701-7660	기획운영과	061-270-2021-6				
			수중발굴과	061-270-2061-72				
				해양유물연구과	061-270-2081-8	061-270-2099		
				전시홍보과	061-270-2041-5	061-270-2059		
				태안사무소	041-675-2031-2	041-675-2039		

전국 시·군·구 문화재 관련 부서

지역	부서명	주소	전화	팩스	지역	부서명	주소	전화	팩스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중구을지로1가 63번지, 별관 1동 3층	02-2171-2585-7	02-2171-2589	부산	문화예술과	연제구 중앙로 2001	051-888-3481-5	051-888-3459
종로구	문화체육과	삼봉길 50	02-731-1164	02-731-0359	중 구	문화공보과	영선고개길 186	051-600-4061	051-600-4069
중 구	문화체육과	배오개길 76	02-2260-1457	02-2260-1163	서 구	문화관광과	서구청1길 1	051-240-4063	051-240-4069
용산구	문화체육과	백범로 78	02-710-3320-1	02-710-3672	동 구	문화체육과	동구 중앙로 734	051-440-4062	051-440-4379
성동구	문화체육과	고산자로10가	02-2286-5211	02-2286-5905	영도구	문화공보과	태종로 1151	051-419-4062	051-419-4069
광진구	문화체육과	자양로 150	02-450-7593	02-450-1689	부산진구	문화체육과	구청로 11	051-605-4064	051-605-4069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하정로 145	02-2127-4708	02-2127-5102	동래구	문화공보과	읍내길 77	051-550-4082	051-550-4069
중랑구	문화체육과	봉화산길 179	02-490-3411	02-490-3649	남 구	문화체육과	남구청길 50	051-607-4062	051-607-4069
성북구	문화체육과	구청길 14	02-920-3058	02-920-2933	북 구	문화체육과	강변 2길	051-309-4062	051-309-4069
강북구	문화공보과	구청길 12	02-901-2091	02-901-6106	해운대구	관광문화과	구청길 1	051-749-4061	051-749-4071
도봉구	문화체육과	마들길 656	02-2289-1152	02-2289-1725	사하구	문화관광과	사하구청길 30	051-220-4082	051-220-4069
노원구	문 화 과	노해길 183	02-950-3088	02-950-3704	금정구	문화공보과	중앙로 3055	051-519-4082	051-519-4069
은평구	문화체육과	은평구청길 8	02-350-3693	02-350-1702	강서구	총 무 과	낙동북로 116	051-970-4113	051-970-4829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연희로 165	02-330-1115	02-330-1430	연제구	문화공보과	연제로 55	051-665-4064	051-665-4069
마포구	문화체육과	성산로 557	02-330-2506	02-330-2519	수영구	문화공보과	수영구청길 13	051-610-4065	051-610-4069
양천구	문화체육과	목동동로 75	02-2650-3410	02-2650-3640	사상구	문화공보과	구청로 34	051-310-4061	051-310-4069
강서구	문화체육과	화곡로 153	02-2600-6071	02-2600-6662	기장군	문화관광과	기장대로 400	051-709-4064	051-709-4070
구로구	문화체육과	가마산길 340	02-860-3416	02-860-2633	대구광역시	관광문화재과	중구 공평로 130	053-803-3751	053-803-3729
금천구	문화체육과	시흥대로 483	02-890-2410	02-890-2274	중 구	문화예술담당	중구청길 1	053-661-2174	053-661-2169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당산로 124	02-2670-3131	02-2670-3594	동 구	문화공보실	아양로 373	053-662-2171	053-943-4616
동작구	문화공보과	장승배기길 16	02-820-1261	02-820-9996	서 구	복지사업과	국채보상로 1162	053-663-2171	053-663-2539
관악구	문화체육과	관악로 462	02-880-3496	02-880-3780	남 구	문화공보실	이천로 75	053-664-2171	053-664-2169
서초구	문화행정과	남부순환로 2584	02-570-6809	02-570-6570	북 구	문화공보실	옥산로 85	053-665-2173	053-665-2169
강남구	문화체육과	학동로 426	02-2104-1263	02-2104-2468	수성구	문화체육과	달구벌대로 663	053-666-2171	053-666-2179
송파구	문화체육과	올림픽로 326	02-410-3412	02-410-3824	달서구	문화체육과	학산로 300	053-667-2172	053-667-2969
강동구	문화체육과	성내동길 27	02-480-1412	02-475-4927	달성군	문화체육과	논공읍 달성공로 33	053-668-3161	053-668-2179

전국 시·군·구 문화재 관련 부서

지역	부서명	주소	전화	팩스	지역	부서명	주소	전화	팩스
인천광역시	문 화 재 과	남동구 시청앞길 25	032-440-4032-3	032-440-8693	경기도 제1청사	문화정책과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031-249-4686	031-242-2289
중 구	문화관광과	중구청길 100	032-760-7134	032-760-7129	경기도 제2청사	문화체육과	의정부시 제2청사 1	031-850-2621	031-850-2639
동 구	문화홍보실	금곡길 175	032-770-6103	032-560-4349	수원시	문화관광과	팔달구 동서로 215	031-228-3085	031-228-3712
남 구	문화홍보실	독성이길 151	032-880-4297	032-880-4868	성남시	문화예술과	수지구 청백리길 10	031-729-3014	031-729-4299
연수구	문화체육과	원인재길 33	032-810-7076	032-810-7089	고양시	문화예술팀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031-961-4183	031-961-4139
남동구	문화예술팀	소래길 88	032-453-2132	032-453-2139	부천시	문화예술과	원미구 계남로 138	032-320-2572	031-320-2149
부평구	문화홍보과	부평로 266	032-509-6411	032-509-7620	안양시	문화예술과	동안구 시민로 205	031-389-2474	031-389-2827
계양구	문화공보실	계산새길 148	032-450-6805	032-450-5099	안산시	문화관광과	단원구 화랑로 110	031-481-2797	031-481-3205
서 구	문화관광팀	서곶길 323	032-560-4342	032-560-4349	용인시	문화관광과	하인구 용인대로 735	031-324-3040	031-329-2149
강화군	문화관광과	강화읍 관청리 163	032-930-3229	032-933-3632	의정부시	문화체육과	의정부로 43	031-828-2156	031-828-4921
옹진군	관광문화과	남구 남성길 166	032-899-2263	032-880-2219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금곡동 185-10	031-590-2067	031-590-2479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	서구 내방로 111	062-613-3481-83	062-613-2469	평택시	문예체육과	남부문화거리 10	031-659-6004	031-659-6029
동 구	문화예술과	동구청로 1	062-608-2223	062-608-2228	광명시	문화체육과	시청로 20	02-2680-6142	02-2680-6177
서 구	문화관광체육과	서구청1길 10	062-360-7254	062-360-7318	시흥시	문화관광과	시청로 20	031-310-2961	031-310-2832
남 구	평생학습과	제석로 17	062-650-7535	062-650-7219	군포시	문화체육과	청백리길 22	031-390-0663	031-390-0025
북 구	문화정보과	우치로 183	062-510-1226	062-510-1520	화성시	문화홍보과	남양동 2000	031-369-2643	031-369-1505
광산구	문화정보과	광산구청로 10	062-940-8225	062-940-8334	파주시	문화관광과	이동동 215	031-940-4354	031-940-4359
대전광역시	관광문화재과	서구 향촌길 70	042-600-3431/2481	042-600-2439	이천시	문화관광과	남천로 59	031-644-2933	031-645-3330
동 구	문화공보실	중앙시장길 100	042-250-1225	042-250-1220	구리시	문화예술과	아차산길 62	031-550-2068	031-550-2803
중 구	문화체육과	중앙로 150	042-606-6284	042-606-6279	김포시	문화예술과	사우동 263-1	031-980-2472	031-980-2739
서 구	문화홍보팀	반월길 56	042-611-6473	042-611-6139	포천시	문화체육과	신원동 58-2	031-530-2064	031-538-2749
유성구	관광공보실	대학로 243	042-611-2077	042-611-2091	광주시	문화관광담당실	송정동 120-8	031-760-4822	031-760-2059
대덕구	문화체육팀	대덕구청5길 20	042-608-6593	042-608-6239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시청길 25	031-678-2474	031-678-2069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남구 중앙로 182	052-229-3710	052-229-3719	하남시	문화체육과	시청길 2	031-790-5397	031-790-6399
중 구	문화체육과	단장골길 1	052-290-0224	052-290-0568	의왕시	문화체육과	시청로 11	031-345-2065	031-345-2781
남 구	문화체육과	돌질로 285	052-226-5413	052-226-5253	양주시	문화체육담당실	남빙동 1-1	031-820-2127	031-820-2109
동 구	문화체육과	봉수로 155	052-209-3474	052-230-9672					
북 구	문화홍보과	연암동 1004-1	052-219-7563	052-219-7569					
울주군	문화관광과	문수로 133	052-229-7632	052-229-7639					

지역	부서명	주소	전화	팩스	지역	부서명	주소	전화	팩스
오산시	문화정보담당관실	성호대로 165	031-370-2064	031-370-3069	충청북도	문화정책과	청주시 상당구 생당로 158	043-220-4631	043-220-4619
동두천시	문화공보과	시청길 27	031-860-2064	031-860-2663	청주시	문화관광과	청주시 상당구 생당로 281	043-220-6166	043-711-6169
과천시	문화체육과	중앙동 관문로 72	02-3677-2470	02-3677-2775	충주시	문화관광과	금능동 700	043-850-6630	043-850-6609
가평군	문화관광과	가평읍 읍내리 513	031-580-2068	031-580-2069	제천시	문화관광과	시청길 15	043-641-5133	043-641-5149
여주군	문화재관리사업소	여주읍 흥문리 4	031-887-3566	031-887-3585	청원군	문화공보과	청주시 상당구 울곡로 27	043-251-3056	043-251-3209
연천군	문화관광과	연천읍 차터리 290-1	031-839-2063	031-839-2469	보은군	문화관광과	보은읍 이평리 45	043-540-3375	043-540-3399
양평군	문화관광과	양평읍 양근리 448-8	031-770-2473	031-770-2804	옥천군	문화공보실	옥천읍 삼양리 174	043-730-3084	043-730-3079
강원도	문화예술과	춘천시 중앙로 1	033-249-2796	033-249-4052	영동군	문화공보과	영동읍 계산리210-1	043-740-3213	043-740-3209
춘천시	문화예술과	춘천시 시청길 7	033-250-3059	033-250-3646	증평군	문화체육홍보과	증평읍 청동리 100	043-835-4114	043-835-4109
원주시	문화관광과	원주시 시청로 1	033-737-2792	033-737-4812	진천군	문화체육과	진천읍 읍내리 463	043-539-3622	043-539-3609
강릉시	문화예술과	강릉시 시청로 66	033-640-5118	033-640-4741	괴산군	문화관광과	괴산읍 서부리 125	043-830-3446	043-830-3229
동해시	공보문화담당관	동해시 천곡동 806	033-530-2192	033-530-2843	음성군	문화공보과	음성읍 읍내리 621	043-871-3065	043-871-3059
태백시	관광문화과	태백시 황지동 244-3	033-522-2083	033-550-2925	단양군	문화관광과	단양읍 별곡리 300	043-420-3255	043-422-3356
속초시	문화체육과	속초시 중앙동 469-6	033-639-2958	033-639-2345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대전광역시 중구 홍영로 155	042-251-3680-5	042-251-2279
삼척시	문화공보실	삼척시 교동 592	033-570-3223	033-570-3132	천안시	문화관광과	번영로 601	041-521-5153	041-550-2039
홍천군	문화체육과	홍천읍 홍천읍 행정로 181	033-430-2323	033-430-2011	공주시	문화관광과	봉황로 342	041-840-2225	041-840-2161
횡성군	기업관광도시과	횡성군 횡성을 읍내리 58-1	033-340-2171	033-340-2595	보령시	문화공보담당관실	성주산로 77	041-930-3225	041-930-3669
영월군	문화관광과	영월읍 영월읍 하성리 242	033-370-2898	033-370-2540	아산시	문화관광과	온천동 1626	041-540-2823	041-540-2569
평창군	문화체육과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033-330-2713	033-330-2592	서산시	문화관광과	관아문길 1	041-660-2226	041-660-2744
정선군	관광문화과	정선군 정안읍 봉향리 267	033-560-2226	033-560-2593	논산시	문화관광과	시청1길 11	041-730-3226	041-730-3228
철원군	관광문화과	철원군 갈매읍 신항리 640	033-450-5520	033-450-5599	계룡시	문화공보과	금암동 10	041-840-2541	041-840-2700
화천군	문화관광과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	033-440-2541	033-440-2593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	군청길 25	041-750-2382	041-750-2379
양구군	문화관광과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	033-480-2244	033-480-2325	연기군	문화공보과	조치원읍 신흥리 123	041-861-2293	041-861-2289
인제군	문화관광과	인제군 인제읍 성동리 340-6	033-460-2081	033-460-2089	부여군	문화관광과	부여읍 동남리 725	041-830-2242	041-830-2239
고성군	문화관광과	고성군 간성읍 하리 12	033-680-3665	033-680-3176	서천군	문화관광과	서천읍 군서리 356-3	041-950-4425	041-950-4459
양양군	문화관광과	양양군 양양읍 군항리 8	033-670-2730	033-670-2733	예산군	문화관광과	예산읍 예산리 600	041-330-7323	041-330-2329
					청양군	문화관광과	청양읍 송병리 100	041-940-2225	041-940-2220
					홍성군	문화공보실	홍성읍 오관리 98	041-630-1228	041-633-4242
					태안군	문화관광과	태안읍 남문리 90	041-670-2254	041-670-2226
					당진군	문화공보과	당진읍 읍내리 515	041-350-3121	041-350-3139

지역	부서명	주소	전화	팩스	지역	부서명	주소	전화	팩스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063-280-3313-5	063-280-3319	무안군	관광문화과	무안읍 성동리 712	061-450-5317	061-450-5578
전주시	전통문화시설과	덕진구 서노송동 568-1	063-281-2167	063-240-0492	함평군	문화관광과	함평읍 함평리 123-1	061-320-3249	061-320-3577
군산시	문화관광과	조촌동 888	063-450-4225	063-450-6399	영광군	문화관광과	영광읍 무영리 198-4	061-350-5224	061-350-5594
익산시	문화관광과	남중동 171 60	063-859-5273	063-840-3291	장성군	문화관광과	장성읍 영천리 1061-2	061-390-7225	061-390-7577
정읍시	문화체육과	수성동 440-1	063-530-7166	063-530-7170	완도군	문화관광과	완도읍 군내리 650-1	061-550-5254	061-550-5577
남원시	문화관광과	도동동 518	063-620-6171	063-620-6707	진도군	문화관광과	진도읍 성내리 64-1	061-540-3137	061-540-3577
김제시	문화관광과	서암동 353	063-540-3882	063-540-3454	신안군	문화관광과	목포시 북교동 178-1	061-240-8354	061-240-8580
완주군	문화관광과	적시역(구 안동동) 681-1	063-240-4026	063-240-4411	경상북도	문화재과	대구시 북구 연일로 60	053-950-3577	053-950-3349
진안군	문화관광과	진안읍 군하리 97-4	063-430-2321	063-430-2710	포항시	문화관광과	남구 시청안길 100	054-270-2273	054-270-2240
무주군	문화관광과	무주읍 무산현길 132	063-320-2543	063-320-2549	경주시	문화재과	안동로 260	054-779-6062	054-779-6069
장수군	산림문화관광과	장수읍 장수리 176-7	063-350-2538	063-350-2317	김천시	세월문화관광과	신음동 1284	054-420-6095	054-420-6378
임실군	문화관광과	임실읍 이도리 390	063-640-2540	063-640-2638	안동시	문화재과	명륜동 344	054-840-6094	054-840-6099
순창군	농촌관광과	순창읍 청화리 315-4	063-650-1724	063-650-1576	구미시	문화체육관광과	송정동 50	054-450-6063	054-450-6069
고창군	문화관광과	고창읍 교촌리 275-3	063-560-2227	063-560-2792	영주시	문화관광과	후천2동 470	054-639-6043	054-634-2153
부안군	문화관광과	부안읍 동중리 222-1	063-580-4388	063-580-4350	영천시	문화관광정보과	시청로 16	054-330-6354	054-330-6069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무안군 심항면 오룡길 1	061-286-5441	061-286-4772	상주시	문화체육팀	남성동 140-3	054-537-7216	054-537-6069
목포시	문화예술과	용당동 1188-2	061-270-8320	061-278-6141	문경시	문화관광과	모전동 220	054-550-6062	054-550-6069
여수시	문화예술과	학동 100	061-690-2222	061-690-8113	경산시	세마을문화과	남매로 159	054-810-6093	054-810-6069
순천시	문화예술과	장천동 53-1	061-749-3226	061-749-3577	군위군	세마을문화과	군위읍 동부리 229	054-380-6062	054-380-6099
나주시	문화관광과	송월동 1100	061-330-7823	061-330-8596	의성군	세마을과	의성읍 후죽리 509-2	054-830-6065	054-830-6099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	중동 1313	061-797-2417	061-797-4169	청송군	문화관광과	청송읍 월막리 330	054-870-6246	054-870-6269
담양군	문화관광과	담양읍 객사리 99-1	061-380-3155	061-380-3579	영양군	문화관광과	영양읍 서부리 739-1	054-680-6063	054-680-6059
곡성군	관광홍보과	곡성읍 읍내리 713-2	061-360-8252	061-360-8592	영덕군	문화관광과	영덕읍 남석리 310-3	054-730-6295	054-730-6399
구례군	문화관광과	구례읍 봉남리 51	061-780-2430	061-780-2577	청도군	문화관광과	회양읍 범곡리 133	054-370-6063	054-370-6379
고흥군	문화관광과	고흥읍 옥하리 200	061-830-5225	061-830-5577	고령군	문화체육과	고령읍 지산리 190	054-950-6105	054-950-6109
보성군	문화관광과	보성읍 보성리 807-2	061-850-5226	061-850-5577	성주군	문화체육정보과	성주읍 경산리 283-1	054-930-6063	054-930-6069
화순군	문화관광과	화순읍 훈리 35	061-370-1226	061-370-1277	칠곡군	세마을과	왜관읍 왜관리 177-1	054-979-6063	054-979-6099
장흥군	문화관광과	장흥읍 간산리 715-11	061-860-0255	061-860-0577	예천군	문화관광과	예천읍 노성리 125	054-650-6391	054-650-6399
강진군	관광개발팀	강진읍 남성리 108-1	061-430-3173	061-430-3577	봉화군	문화체육관광과	봉화읍 내성리 285	054-679-6388	054-679-6399
해남군	문화관광과	해남읍 성내리 4	061-530-5225	061-530-5577	울진군	문화관광과	울진읍 읍내리 464	054-789-6655	054-785-6899
영암군	문화관광과	영암읍 동무리 158	061-470-2251	061-470-2577	울릉군	문화관광과	울릉읍 도동리 206-1	054-790-6391	054-790-6359

지역	부서명	주소	전화	팩스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창원시 대방로 1	055-211-4843	055-211-4819
창원시	문화관광과	중앙로 87	055-212-2184	055-212-2189
마산시	문화체육과	중앙동3가 4-11	055-220-3716	055-240-2049
진주시	문화관광과	상대동 284	055-749-5074	055-749-2807
진해시	문화관광실	풍호동 1	055-548-4064	055-548-2439
통영시	문화관광과	무전동 357	055-650-4521	055-650-4599
사천시	문화관광과	용현면 덕곡리 501	055-831-2717	055-831-6024
김해시	문화재과	부원동 623	055-330-4843	055-330-3929
밀양시	문화관광과	교동 1000-1	055-359-5636	055-359-5655
거제시	문화체육과	신현읍 고현리 717	055-639-3225	055-639-3449
양산시	문화관광과	남부동 505	055-380-4821	055-380-4139
의령군	문화체육과	의령읍 중동리 261-1	055-570-2403	055-570-2044
함안군	문화관광과	가야읍 말산리 213	055-580-2322	055-580-2309
창녕군	문화홍보과	창녕읍 교리 1	055-530-2235	055-530-2259
고성군	문화관광과	고성읍 성내리 198	055-670-2223	055-670-2209
남해군	문화관광과	남해읍 서변리 24-1	055-860-8632	055-360-3748
하동군	문화관광과	하동읍 읍내리 180-3	055-880-2365	055-880-2369
산청군	문화관광과	산청읍 옥산리 465-3	055-970-6441	055-970-6409
함양군	문화관광과	함양읍 운림리 31-2	055-960-4415	055-960-5509
거창군	문화관광과	거창읍 상림리 64-1	054-940-3185	055-940-3209
합천군	문화공보과	합천읍 합천리 337	055-930-3175	055-930-316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제주시 문연로 2	064-710-3428	064-710-3429
제주시	문화체육과	제주시 시청로 28	064-728-2731	064-728-271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시 중앙로 308	064-760-2501-7	064-760-2489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편람

기획·편집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042-481-4835~4837)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http://www.ocp.go.kr>

감수·교정 : 보존정책과장 강경환
사무관 조운연

인쇄 : 2009년 12월

발행 : 2009년 12월

발행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디자인·인쇄 : 한국칼라
대전 동구 삼성동 271-3 (042-255-5774)

* 이 책에 수록된 글과 그림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
(문화재청)의 승인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